

#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8-250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 견인업무의 세부 사항을 명문화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또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견인 추가 요금 및 보관요금 적용기준 설정(안 별표)
-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신설(안 제6조)
-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내용 신설(안 제8조)

## □ 개정조례안 : 붙임1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수반사항 : 붙임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7. 29. ~ 2019. 8. 19. (21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 불임 1 >

#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경기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안산시”를 “시장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대행법인 등”을 “대행법인등(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이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을 “이동업무 대행법인등”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법인 등”을 “대행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
-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의 신분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대 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착오 단속부터 적용한다.

| 소관 실·과      |                | 대중교통과                        |
|-------------|----------------|------------------------------|
| 임<br>안<br>자 | 실·과장<br>직위·성명  | 대중교통과장<br>임 재 문              |
|             | 담당·팀장<br>직위·성명 | 교통지도팀장<br>조 경 래<br>(행정 2296) |

[별표]

○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 대상차량               | 견인료                 |                    |
|--------------------|---------------------|--------------------|
|                    | 기본 요금<br>(편도 5km까지) | 추가 요금<br>(매 km증가시) |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br>6.5톤 미만 | 40,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60,000원             | 2,500원             |

※ 안산시 관내의 경우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외 지역일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2. 보관 요금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별표2)에 의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최대요금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구 분         | 보관 요금                          | 부과 기준                   |
|-------------|--------------------------------|-------------------------|
| 시간제<br>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300원<br>추가 10분마다 200원 | 보관기간이 1일을<br>초과하지 않는 경우 |
| 1일 주차요금     | 4,500원                         | 보관기관이 1일을<br>초과하는 경우    |
| 최대요금        | 20만원 한도                        | 장기 미 반환차량               |

<물 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u>제2조(차량의 견인)</u> ① <u>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경기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안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 <p><u>제2조(차량의 견인)</u> ① <u>시장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br/>----- 대행법인등(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br/>----- .</u></p> |
| <p>② <u>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u></p> <p><u>&lt;신 설&gt;</u></p> | <p>② <u>시장이 제1항-----<br/>-----<br/>-----<br/>-----<br/>----- . &lt;후단 삭제&gt;</u></p>   |
|  | <p>③ <u>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u></p>   |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② 시장-----  
-----  
-----  
-----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  
-----.

② 시장-----  
-----  
-----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  
-----  
----- 이동업무 대행법인등  
-----  
-----  
-----.

② -----  
대행법인등-----.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 2. 소지품 등

###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 2. 사용자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 3. 사용자의 신분

### <신 설>

###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

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

## [별표]

### ○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1. 경인 요금표

| 구 분<br>대상차량        | 경 인 료               |                     |
|--------------------|---------------------|---------------------|
|                    | 기본 요금<br>(원도 5km까지) | 추가 요금<br>(매 1km증가시) |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br>6.5톤 미만 | 40,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60,000원             | 2,500원              |

#### 2. 보관 요금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별표2)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 [별표]

### ○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1. 경인 요금표

| 구 분<br>대상차량        | 경 인 료               |                     |
|--------------------|---------------------|---------------------|
|                    | 기본 요금<br>(원도 5km까지) | 추가 요금<br>(매 1km증가시) |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br>6.5톤 미만 | 40,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60,000원             | 2,500원              |

\* 인천시 관내의 경우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외 지역인 경우 추가 요금을 정수한다.

#### 2. 보관 요금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별표2)에 의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최대요금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구 분                 | 보관 요금                          | 부과 기준                |
|---------------------|--------------------------------|----------------------|
| 시간<br>제<br>주차<br>요금 | 최초 30분까지 300원<br>추가 10분마다 200원 | 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1일<br>주차<br>요금      | 4,500원                         | 보관기관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
| 최대<br>요금            | 20만원 한도                        | 장기 미 반환차량            |